

‘유사언론행위’와 공갈죄 성립 여부

글 양재규 | 언론법 전문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
eselltree92@gmail.com



광고주가 직접 물어보고, 법적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보는 Law119

양재규 언론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광고,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업무 전반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펜은 칼보다 여전히 강할까? 그런 것도 같다.

기업이나 관청을 상대로 돈 뜯어내려는 기자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현실을 보면서 갖게 된 생각이다.

펜의 힘이 정말로 강력하다면 그 힘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Q 기사를 빌미로 광고 영업을 뛰는 언론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유사언론행위가 ‘공갈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좀 막연하다. 정말 ‘공갈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

A 포털에서 기사 검색을 해보면, 기자가 공갈 혐의로 구속되거나 법원에서 벌금 또는 징역(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약점을 잡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경우¹도 있었고, 관청에 대한 비판기사를 빌미로 광고를 받아낸 경우도 있었으며², 다른 기자 내지 공무원과의 인맥을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낸 경우³도 있었다. 모두 최근 2~4년 사이에 실제로 발생한 일들이다. 유사언론행위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공갈죄에 대한 형법 교과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형법 교과서로 꼽히는 <형법각론> (이재상 외 2, 박영사, 2017년)에서는 1990년대 공갈죄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수법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파트공사 하자에 관하여 계속 보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돈을 뜯어낸 전형적인 사례도 있고(91도80), 건설사와 신문사 간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지면광고를 판매한 이색적인 사례(96도1959)도 있었



다. 공익을 위해 행사돼야 할 언론 권력을 사익을 위해 행사하려는 기자 및 언론사 관계자들이 있다면, 그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사언론행위를 공갈죄로 처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핵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첫 번째 요건은 ‘협박’의 유무다. 공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박’이 있어야 한다(형법 제350조). ‘협박’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96도1959).

1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627010003299>

2 <https://www.mbn.co.kr/news/society/4774250>

3 <https://www.news1.kr/articles/4832919>



한마디로, ‘해악(害惡, harm)의 고지’가 협박이다. 고지하는 해악의 종류라든가,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약이 없다. 합법과 불법, 그리고 이 둘의 경계에 있는 것을 포함해 상대방에게 해롭기만 하면 다 협박이 될 수 있다. 합법적 해악이라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기자가 ‘기사화할 것이다’고 하는 말 또한 공갈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 역시 노골적일 수도 있고, 암시적일 수도 있다. 대놓고 말해도 문제고, 은근히 말해도 문제다. 앞에서 소개한 지면광고 판매사례(96도1959)에서 그럴듯한 명분(건설사와 신문사 간 갈등 해소)으로 포장해 에둘러서 고지한 해악(지면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면 비판기사가 계속될 것)이라도 공갈죄 요건인 ‘협박’에 해당된다고 본 이유다. 공갈죄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건은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다. 공갈죄는 재산범죄의 일종이다. ‘해악의

고지’를 수단으로 삼는 범죄에는 공갈죄 외에도 협박죄, 강요죄 등이 있다. 협박죄와 강요죄는 모두 ‘의사결정의 자유’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재산범죄에 속하는 공갈죄와 구별된다.

공갈죄가 재산범죄이기는 하나, 재산상 이득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이득을 취하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취득하지 못했다면 ‘공갈미수죄’가 될 뿐이다(형법 제352조).

A주간신문 발행인 B는 ○○시청 공보담당자를 만나 A주간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시청 광고 분량을 타 신문사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B가 공보담당자와 만나기 전, A주간신문은 ○○시청에 대한 비판적 기사와 사설을 연거푸 보도했다. 해당 기사와 사설은 막연한 의혹 또는 소문에 기초한 것으로 충분한 사실확인도 없이 작성된 것들이다. 이 일로 인해 B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대법원은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이 사례에서 B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두 가지였다고 본다. 먼저 협박, 즉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대법원은 “협박이 되려면 이와 아울러 위 요청(광고비 증액)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비난기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언질이나 태도를 나타내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이 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해악의 고지가 정말 없었던 것인지에 관해 다소 의아하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B가 ○○시청 공보 담당자를 만나기 전, A주간신문에서 ○○시청에 관해 연속적으로 비판기사 내지 사설을 보도했는데 이것 자체를 ‘협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다. 상식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재판에서는 다르다. 특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다. 다음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도 애매했다.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다른 언론사 수준으로 광고비를 책정해달라는 정도의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최근 유사언론행위로 자주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의 공갈죄 성립 여부를 참고삼아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❷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실장을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는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보도, 인권분야에서 언론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광고, 홍보, 마케팅 등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yoojh1999@kaa.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주제를 선정, [Law119]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 표 | 유사언론행위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의 공갈죄 성립 여부

	해악의 고지	재물영득의사	공갈죄 성립
악의적 보도 이후 광고·협찬 요구	△	○	△
포털검색제휴 이후 광고비 조정 요청	×	○	×
기획·연속보도(시리즈 기사)	○	×	×
특집기사 ⁴ 를 빌미로 광고·협찬 요구	△	○	△
보도예정사실 고지 이후 광고·협찬 요구	○	○	○
비판기사 온라인 삭제를 조건으로 광고·협찬 요구	○	○	○

4 특집기사가 부정적 보도라면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겠으나 긍정적 보도라면 해악의 고지가 되지 않고 이에 따라 공갈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